

**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3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	2020.12.1.
발 의 자	이재운, 김종두, 이흥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순모, 최정환, 신재화, 권재경, 표주숙 의원

**1. 제안이유**

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**2. 주요내용**

가.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 추가(안 제3조제2항)

- 1) 1,000원권
- 2) 2,000원권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경제교통과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0.12. 1. ~ 12. 7.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를 제3호·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,000원권
2. 2,000원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</b>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5,000원권</p> <p>2. 10,000원권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</b>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1,000원권</p> <p>2. 2,000원권</p> <p>3. 5,000원권</p> <p>4. 10,000원권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